

개정 전	개정 후
	<p><u>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)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해당 지역이 고용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고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</u></p>

■ 법률 부칙

제2조(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① … 중략 …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